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 조항 정비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55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개별 법률 검토	4
가. 「기술사법」 개정 검토	4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8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검토	11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13
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검토	15
바. 「원자력안전법」 개정 검토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9. 6.

다.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사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업무 행위자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이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임.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당사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음.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임용, 자격 또는 인허가가 가지는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1)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

1)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2²⁾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 등이 원하는 모든 직역에서 모든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요구되는 자격 등의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를 이유로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특정 직역이나 자격·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 것이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해당 법률들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인데, 제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개별법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개별 법률 검토

가. 「기술사법」 개정 검토(안 제1조)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기술사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취소 등의 사유에서 ‘과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생략)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 ----- ----- -----. 1.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 ----- 2. ----- -----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 ----- ----- -----. 1.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등록거부)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 ----- ----- -. -----제1호 또는 제4호-----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³⁾

3) 참고로,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로 분류되는데, 기술사는 최고 등급에 해당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급	검정의 기준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

기술사의 직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 등이고,⁴⁾ 기술사의 직무 수행은 ① 주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기술사(개인)와 ②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① 기술사(개인) 자격 자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주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측면이 강함.

그러나 ② 기술사사무소는 시설물의 설계·감리 등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용역 수행시 배상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임.

산 업 기 사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 능 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4)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는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제12조(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등 용역의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재무적인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사사무소의 업무 내용과 성격, 계약 이행에 요구되는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⁵⁾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안 제2조)

1) 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② (생략)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사(개인)의 경우,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할 수 있도록 기술사(개인) 등록에 대한 조항(제5조의8제1항, 제2항) 개정예 동의하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의 경우 시설물 설계·감리 등 계약 당사자로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이 필수적이므로 기술사사무소 개설 현행 등록 거부, 등록취소 사유(제7조제2호, 제12조제3호)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③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비파괴검사’이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 등의 방법이 있음.⁶⁾

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 나. 육안 비파괴검사
 - 다. 열화상(熱圖像) 비파괴검사
 -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현행법에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 등록기준⁷⁾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파괴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파괴검사의 기술능력과 경험뿐만 아니라 검사에 필요한 장비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비파괴검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서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기준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비파괴검사의 업무 내용과 성격, 계약 이행에 요구되는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⁸⁾

7)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관련)

1. 기술인력

기술인력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다.

2. 장비

종목별	장비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 1대 이상
다. 자기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라. 침투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마. 와전류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바. 누설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사. 그 밖의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 비고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파괴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등록기준이 요구되고, 제정안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의로 부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불법행위의 방지 및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검토(안 제3조)

1) 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⁹⁾은 15명 이내의 재단 이사(이사장 1명 포함)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진흥재단의 사업¹⁰⁾ 계획, 예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원)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
 -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산·정원, 시설 설치 및 임원 선임 등 중요 사항을 의결함.

현행법에서 특구진흥재단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나 비밀누설 등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¹¹⁾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특구진흥재단 임원은 특구내 각종 개발 및 투자유치 등 사업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담당 업무의 성격상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관리 등 부동산 유관 업무, 특구기업의 성장·상장 지원 업무 등 경제적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 집

-
-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사업화 지원 인력·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정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구재단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¹²⁾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배제할 근거가 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¹³⁾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안 4조)

1) 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략)	제36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1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관리 등 부동산 유관 업무 및 특구기업의 성장·상장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특구재단 임원의 재산상의 신용도가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구재단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검토의견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연구시설·장비·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등을 담당함.¹⁴⁾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는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는 것으로 전문적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지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임.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측면이 강함.¹⁵⁾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시설·장비·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3.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 및 관리하는 것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 등 재정적인 사유와 직무의 관련성이 적어 개정안을 수용하는 의견임.

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검토(안 제5조)

1) 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우주발사체 허가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5. (생략)	제12조(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제외)로써,¹⁶⁾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¹⁷⁾

16)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

발사 허가 심사 항목으로는 발사 사용 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 부담 능력 등이 있음.¹⁸⁾

발사 허가 심사 항목으로 허가 신청자의 재정 부담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우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우주발사체 허가 대상자의 재산상의 신용은 발사 허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보이므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배제할 근거가 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바. 「원자력안전법」 개정 검토(안 제6조)

1) 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허가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	---	---	---	---

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8)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 4. (생략)	제14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해야 함.¹⁹⁾

위원회는 기술능력,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 기준 부합 여부, 품질보증계획서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하게 되는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허가 기준 자체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공사, 사업, 사용 등의 자격 또는 인·허가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성·신뢰성 및 재

19) 「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상의 신용 등에 대한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⁰⁾

문 의 처
02)6788-5229

2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의 인허가·등록 대상이 되는 시설·행위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인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 그 임원의 자격은 공공성·신뢰성 및 재산상의 신용이 높게 요구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따른 취업제한 등보다 공공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실익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